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서제원(기소), 박광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철홍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1. 1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시청로 113에 있는 시청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김천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다른 자동차 등과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및 휠다 부분으로 마침 신호에 따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망 B(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원바디 화물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로 하여금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있던 버스정류장을 덮치게 하여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75세), 피해자 D(여, 64세), 피해자 F(여, 49세), 피해자 G(여, 72세)을 각각 들이받게 하고, 이어 위와 같은 사고 충격으로 진행 방향 우측 후방으로 튕겨 나가면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신호에 따라 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공단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뉴베르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망 B에게 머리뼈 골절, 목뼈 분리손상, 심장 파열, 대동맥 열창, 간 및 비장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여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09:16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사고관련 신호공사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운행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목격차량(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I CCTV 캡처사진, 사고차량 촬영 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5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도록 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의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도 전보된 점, 어떠한 형사처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판사 안희경 _____